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06. 2. 28. 개정 판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판 (시행 2016. 3. 1.)

바뀜 2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217/compare?from=543&to=547>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4:58:39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산 시스템의 개발, 운영에 관한 계획 2. 인터넷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전산 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전산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산 시스템의 개발, 운영에 관한 계획 2. 인터넷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전산 교육에 관한 사항 4. 교내외 통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정보전산원장(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기획실장, 교무부처장, 사무부처장, 산학협력단장, 개발운영팀장, 전산지원팀장, 전산관련학부 전공교수(3명), 임명직교수(2명), 기획실 홍보담당, 도서관 전산담당, 교무과장 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정보전산원장으로 하며 팀장을 서기로 한다. ③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정보전산원장(의장), 정보전산원팀장(서기), 재무실장, 내부감사, 사무부처장, 기획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 컴퓨터학부장, 해당 분야전문교수(1, 수시변경), 정보전산원해당실무자, (1. 수시변경), 초청위원(해당사업부서)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②위원장은 정보전산원장으로 하며 팀장을 서기로 한다. ③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조문대비표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타 정보전산원 운영에"를 "교내외 통신에"로 하고, "주요사항"을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정보전산원장(의장), 정보전산원팀장(서기), 재무실장, 내부감사, 사무부처장, 기획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 컴퓨터학부장, 해당 분야전문교수(1, 수시변경), 정보전산원해당실무자, (1. 수시변경), 초청위원(해당사업부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